

의안번호	2217789
의 퇴 인	송옥주의원
회 답 일	2026. 7. 15.
추계번호	26B1882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1조 (환경친화적 선박의 연료생산자 등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항만공사·조선사·해운 선사 등과 공동으로 환경친화적 선박 및 친환경 연료 공급 협의회를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제2항) 1. 환경친화적 선박의 건조 완료 시점 및 친환경 연료 공급 기반시설 완공 시기의 동기화를 위한 지원 2. 환경친화적 선박 및 친환경 연료 공급 실증을 위한 지원 3. 그 밖에 환경친화적 선박 및 친환경 연료 공급에 대한 실증 및 상용화에 대한 지원	재량규정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운영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3항)	의무규정
2	안 제12조의2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 융자 또는 보조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선박 및 관련 기자재의 실증, 시험·인증 및 상용화 사업 2. 환경친화적 선박 및 관련 기자재의 기술개발, 공급망 구축 및 산업 기반 강화 사업 3. 환경친화적 선박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 사업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재량규정

II. 미첨부 등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11조 (환경친화적 선박의 연료생산자 등에 대한 지원)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12조의2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항만공사·조선사·해운선사 등과 공동으로 환경친화적 선박 및 친환경연료 공급 협의회를 구성하고 실증 및 상용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이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관련 사업을 하는 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에 따라 신규사업의 추진 또는 기존 사업의 확대 등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행법에 따른 친환경 선박 관련 사업의 주요 내용 및 예산 현황은 [표 1]과 같음

[표 1] 친환경 선박 관련 사업 현황

사업명	주요내용	예산 현황(억원)		
		2024	2025	2026
친환경선박 보급 및 운영지원	국가에서 인증하는 친환경선박(LNG, 하이브리드 등)을 건조하는 사업자에 선박 건조비용의 일부(선가별 차등) 보조금 지원	142.5	100.5	135
글로벌 저탄소선박 정책 대응 지원	국적외항화물선사가 친환경 선박 신조 시, 탄소배출 저감도에 따라 선박 건조가격의 최대 10% 보조금 지원 추진	226	230	280
친환경 설비 개량 이차보전	외항화물선에 친환경설비(선박평형수처리설비, 탈황장치(Scrubber), AMP 수전설비, 에너지효율개선장치 등) 설치 시 이차비용 일부* 보전 * 친환경 설비 개량 자금 대출 시 이자의 최대 2%	40	31	19
친환경 관공선 도입	노후 선박은 대체건조 여부 확인을 위한 상태평가 수행, 운항 중인 공공선박은 친환경 개조(저감장치 장착) 지원 * 선령이 낮아 대체건조 계획이 없는 선박(약 10년 미만 등)	55	47	50
친환경·안전 설비 수출지원	국내기술 선박기자재의 국제시장 진출을 위해 사전컨설팅, 해외인증, 박람회 참가 등 수출지원	-	-	30
친환경선박 전주기 혁신기술개발(R&D)	미래선박 시장 주도를 위한 ①원천·핵심기술 개발, ②육상 시험평가, ③연안선박 해상실증 및 ④법제도·표준화를 통한 상용화 기반 마련	188.8	171.8	85.1

사업명	주요내용	예산 현황(억원)		
		2024	2025	2026
안전기반 소형 수소추진 선박 기술개발 및 실증(R&D)	수소연료전지선박 육해상 실증 및 친환경연료 화재·폭발 안전성 확보기술 개발	10	42.3	62.9

자료:해양수산부

- 다만,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추진될 구체적인 사업의 대상 및 지원 규모·방법·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지원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들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현시점에서는 합리적인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장우윤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우윤	02-6788-3735	jangwy93@nabo.go.kr